#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618

발의연월일: 2024. 10. 8.

발 의 자:김미애・이주영・서명옥

임이자 • 백종헌 • 김재섭

김상욱 · 최수진 · 최보윤

주진우 · 송석준 · 유상범

의원(12인)

#### 제안이유

과거보다 줄어든 기회 속에서 현 청년세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거듭된 실패 경험으로 구직의지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방 밖으로 나오지 않으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음. 2023년 기준 정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청년들이 최대 54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함.

한편 사회진출 출발선에서부터 불리함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도 있음. 2023년 기준 가족돌봄청년 약 10만명, 자립준비청년이약 1만명으로, 가족안전망이 매우 취약한 청년들임.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꿈을 키우고 성취하는데 필요한 정서적·경제적 지원, 학업 시간등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경우가 많음. 성년이 되어 마주하게 되는 치열한 경쟁 앞에서 또래 동년배들에 비해 더욱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음.

최근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의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청년들을 국가 차원의 정책지원 대상으로 정의하고 실질적 지원내 용 및 지원체계를 규정한 법적근거는 현재 부재한 상황임.

이에 이 법은 우리 사회에서 국가적 도움이 필요한 위기 청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위기청년들을 위한 전담 발굴·지원체계 구축 및 구체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고립·은둔으로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가족안전망이 취약한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위기청년 전담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궁극적으로 가정환경 차이에 따른 청년세대 내 출발의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사회 모든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참여를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사회진출 문턱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세대 내 공정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위기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말하며, "도움 필요 청년"이란 위기청년 중 이 법에 따른 전담 지원체계를 통한 밀착 사

례관리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청년을 말함. 다만, 도움 필요 가족 돌봄청년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 소년을 포함함(안 제2조).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3년마다 위기청년 실태조사를 실시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도움 필요 가족돌봄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은 전국의 전담 센터 중 한 곳에 밀착사례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8조).
- 마. 전담센터의 장은 가족돌봄청년 밀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밀착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 경우전담인력은 가족 또는 청년의 동의를 전제로 수립된 계획에 포함된 각종 공공·민간 지원 서비스에 대하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안제9조 및 제10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하여 당사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고, 아픈 가족을 위한 장기요양급여, 사회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및 안 제12조).
- 사. 전담센터의 장은 고립·은둔청년들의 일상회복지원을 위해 전담센터에서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립·은둔청년 선제발굴을 위해 실업급여 이

력,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청년 1인 가구의 거주지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음(안 제16조).

-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탈 고립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기관에 대해 '고립·은둔 극복 전문기관'으로 인증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기청년 전담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법률 제 호

#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위기상태에 놓여 있지만 주변에 의지할 곳이 마땅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전담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업·취업 등 사회진출 문턱에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사회적 고립 위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참여 안전망 강화 및 나아가 청년세대 내 공정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위기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19세 이 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 가. 가족돌봄청년: 제9조제1항제1호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일 상생활을 함께 하는 가족구성원으로서,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이들을 돌보는데 할애함으로써 학업·직업 등 본인이 원하는 주체적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청년
    - 나. 고립・은둔청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일정기간 이

- 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현저 히 곤란한 청년
- 다.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4호·제 5호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한 위기상태에 놓인 청년
- 2. "도움 필요 청년"이란 제1호에 따른 위기청년 중 이 법에 따른 전담 지원체계를 통한 밀착 사례관리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청년 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된다.
  - 가. 도움 필요 가족돌봄청년 : 이 경우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도 포함한다.
  - 나. 도움 필요 고립 · 은둔청년
- 3. "밀착사례관리 대상자"란 제2호에 따른 도움 필요 청년 중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4호 전담센터에서 제공하는 밀착사례관리 대 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4. "전담센터"란 제20조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에서 위기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 년의 건강한 사회참여와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

- 데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밀착사례관리 대상자들이 전담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내 복지, 보건, 주거, 법률, 금융, 교육, 일자리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 2. 전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병원, 사회복지관 등과 연계한 위기청년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할 것
- 3. 밀착사례관리 대상자에 다양한 민-관 서비스 제공 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 4.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및 그 가족, 그리고 도움 필요 청년들을 대 상으로 상담 및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전담센터 인력들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
- 5. 전담센터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위기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위기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이를 포함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전국 전담센터들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3년마다 위기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발굴된 도움 필요 청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전제로 해당 청년의 개인정보를 전담센터에 공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및 결과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장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

#### 제1절 가족돌봄청년 지원

- 제8조(신청접수 및 초기상담 실시) ① 도움 필요 가족돌봄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은 주소지 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의 전담센터 중 한 곳에 밀착 사례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를 받은 전담센터의 전담인력은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거주지 방문 등 신청자에 적합한 방식으로 초기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초기상담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도움 필요 가족돌봄청년의 인적사항, 가구특성, 거주환경
  - 2. 도움 필요 가족돌봄청년 가구의 사회보장급여 수급현황
  - 3. 도움 필요 가족돌봄청년의 주 중 가족을 돌보는 시간 및 가구의 주 소득위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를 받은 전담센터의 장은 효율적 초기상 담을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전담센터로 초기상담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
  - ④ 전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밀착 사례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

- 움 필요 가족돌봄청년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미성년자인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동의도 같다고 본다)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도움 필요 가족돌봄청년이 직접 신청한 것으로 본다.
-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공식 도움을 요청한 청년으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진료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도움 필요 가족돌봄청년으로 판단하여 전담센터에 지원을 요청한 자
  - 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
  - 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다. 「청소년 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
  -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 자
  - 마. 「청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년시설의 종사자
  -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족돌봄청년 발굴과 관련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한 기관의 종사자
- ⑤ 전담센터의 장은 가족돌봄청년의 효과적 발굴을 위해 전담센터가 속한 주소지 지역 인근에 소재한 제4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기관·법인·단체 및 관련 시설의 장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노력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전담센터의 밀착 사례관리 신청접수,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상담전화운영, 초기상담 및 전담센터의장의 직권신청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밀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기준) ① 제8조에 따라 전담센터의 밀착사례관리 지원을 신청한 도움 필요 가족돌봄청년이 밀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1. 돌봄이 필요한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고령, 장애, 질병, 중증수술 등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심신 이 쇠약해져 타인의 도움없이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사람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
    - 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활동지원 급 여 수급자
    - 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 2. 제1호에 따른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도움 필요 가족돌봄청년 당사자 외 35세 이상 다른 가족구성원이 없을 것. 다만, 35세 이상다른 장년 가구원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도움 필요 청년이 사실상 가족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3.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도움 필요 가족돌봄청년이 동거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주민등록법」 상 주소지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움 필요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소득·소비활동의 공유, 정기적 간병 방문 등 사실상 일상적 생활을 함께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4. 도움 필요 가족돌봄청년이 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득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함으로 인해 본인의 학업 및 취업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
-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전담센터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초기상담 결과 밀착사례관리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도움 필요 가족돌봄청년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어 당사자 가구를 대행하여(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도 포함한다) 제1항제1호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밀착 사례관리계획 수립) ① 전담센터의 장은 가족돌봄청년 밀

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별 밀착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 1. 제8조에 따른 초기상담 결과
- 2.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한 서비스
  - 가. 돌봄, 간병, 의료 분야 공공 · 민간서비스
  - 나. 그 밖에 수급가능한 사회보장급여
- 3. 가족돌봄청년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
  - 가. 전담센터에서 연계 가능한 주거, 금융, 법률, 교육(공공·민간 장학금 포함), 일자리 분야 공공·민간서비스
  - 나. 제11조에 따른 자기돌봄비 사용계획
  - 다. 중장기 미래진로 계획 및 정기적 진로 상담계획
- 4. 기타 전담센터가 소재한 지역사회 내 제공 가능한 연계자원
- ② 전담센터의 장은 밀착사례관리 대상자가 단계적으로 가족돌봄부담에서 벗어나 학업, 더 나은 일자리 등 본인의 미래준비를 위해 시간과 비용투자를 할 수 있도록, 밀착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전담센터의 장은 제1항의 밀착사례관리 계획에 포함된 사회보장 급여 및 각 공공·민간 지원서비스에 대하여는 가족돌봄 밀착사례관리 대상자(미성년자인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도 포함한다) 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에서 한 명의 동의를 받아 이들을 대행

- 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장기적 비용부담, 학교선택과 연 관된 장학금 등 청년 당사자 및 그 가족에 금전적 부담이나 책임, 의무가 존재하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착 사례관리계획의 구체적 수립 방법, 절차 및 종결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이 고시한다.
- 제11조(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에 따른 가족돌봄청년 밀착사례관리 대상자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는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돌봄비 수급자에 대하여 자기돌봄비지급을 개시한 연도부터 최대 3년간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다만, 수급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1.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돌봄비 지급을 위해 「사회보장급 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를 준용하여 가족돌봄청년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할 수 있다. 이 때 "보장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부양의무자"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으로, "지원대상자"는 "가족돌봄청년 밀착사례관리 대상자"로, "사회보장급여"는 "자기돌봄비"로본다.

- ④ 제1항에 따른 자기돌봄비의 구체적 선정기준, 지급 방식, 지급 절차, 지급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가족돌봄청년 사회보장급여 수급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년 밀착사례관리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다만, 인지지원 등급은 제외한다)의 주수발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년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비스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본인부담금 부담비율 등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청년 밀착사례관리 대상자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수급자인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9조제5항에 따른 조건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 제2절 고립 · 은둔청년 지원

- 제13조(고립·은둔 기준 과학적 척도)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청년의 고립·은둔청년 인정, 고립·은둔 정도 등을 객관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표준척도 및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 제14조(초기상담 및 일상회복계획 수립) ① 전담센터의 장은 제2조의 도움 필요 고립은둔청년에 대해서는 개인 동의를 얻어 고립·은둔 전문 초기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 동의는 제8조에 따 른 신청으로 본다.
  - ② 전담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 중 초기상담 결과와 제13 조에 따른 표준척도, 제15조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 의지 등을 바탕 으로 고립·은둔 밀착사례관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③ 전담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고립·은둔 밀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제15조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한 개인별 일상회복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있도록 지속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초기상담 결과 도움 필요 고립·은둔청년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이 의심될 경우, 당사자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인근의 정신건강 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것을 안내할 수

있다.

- 제15조(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 제공) ① 전담센터의 장은 보건복지 부령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고립·은둔청년 밀착사례관리 대상자를 위해 전담센터에서 맞춤형 일상회복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해 필요한 경우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본인 부담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범위, 참여기한, 본인부담금 산정방법, 본인부담 상한,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고립·은둔청년 선제 발굴)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립·은둔청년 선제 발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
  - 1. 「고용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 이력
  - 2. 최근 6개월 간 「국민건강보험법」에 건강보험료 납부기록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중 가족과 떨어져 고시원, 원룸 등에서 혼자 생활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 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료 정보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된 고립·은둔청년 위기군 정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위기청년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 다)에게 위기청년 주거지 현장방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방문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 기통신사업자에게 위기청년의 개인 전화번호 조회를 요청할 수 있 으며,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기청년의 개 인 전화번호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 1.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당사자와 직접 연락이 되지 않고, 인근 주변인 등 진술로도 숙소에서의 인기척 확인을 못한 경우
- 2. 주변 사람이 느낄 정도로 숙소에서 악취가 난다고 의심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인된 개인 전화번호 정보 및 관련 정보를 제2항의 현장방문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지역 전담센터의 장에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고 위기청년에 대한 안부를 신속히 확인하도록 조치 하여야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보유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고립·은둔 극복 전문기관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립·

은둔청년의 일상생활 및 가족관계 회복, 자립의지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법인· 기관·단체에 대하여 고립·은둔 극복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 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법인·기관·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인증을 받은 법인·기관·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법인·기관·단체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을 받은 법인·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 년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

다.

- 제19조(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 2. 제17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법인·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장 위기청년 전담지원 기반 구축

- 제20조(위기청년 전담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기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위기청년 전담 지원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담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담센터 추진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전담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업무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전담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전담센터의 장에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정보의 처리 권한을 줄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청년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다.
  - 1.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자료 중 학생의 인적사항, 출결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2.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전자의무기록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제22조(중앙위기청년정책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전국 각 전담센터에 대한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해 당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중앙위기청년정책센터(이하 "중앙정책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

다.

- ② 중앙정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위기청년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2.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담센터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및 전 담센터 관리
- 3. 위기청년 정책 · 지원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 4. 위기청년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홍보 및 대국민 인식개선
- 5. 제13조에 따른 고립·은둔 기준 과학적 척도의 마련
- 6.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립・은둔청년 온라인 상담・발굴체계 구축
- 7. 그 밖에 위기청년 정책 ·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 ② 중앙정책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특성에 따라 복수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중앙정책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중앙정책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5장 보칙

제23조(시범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24조(개인정보보호) ① 전담센터의 장은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관리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전담센터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청년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전담센터의 장은 고립・은둔 당사자가 이 법에 따른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일상회복과 자립 등 지원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및 지원 이력을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26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7조(과태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 2.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자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법률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

된 날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담센터의 지정 등 이 법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